

# —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—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 2. 제안이유

- 지식정보 사회에 지식인프라의 핵심기관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복지와 문화체험, 학습공간의 장으로 활용
-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선산지역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.

## 3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(시립선산도서관 예정부지 매입)

〈예정부지 매입〉

- 추정가액 : 267,415천원(공시지가 기준)
- 대상토지 : 8필지 2,035㎡ (616평)

## 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, 제38조

## 5. 검토의견

- 시립선산도서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건임.
- 선산지역은 문화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문화수준의 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 매입건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